

# 서울신학대학교 학칙

## 제 1 장 목적과 편제

**제1조 (목적)** 서울신학대학교는 대한민국 고등교육법과 성서에 근거한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신앙전통에 따라 심오한 학문연구와 교육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며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교회, 사회, 국가 그리고 인류에 공헌할 지도자를 양성함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 학과와 학과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7.3.1., 2012.11.16., 2013.12.11., 2014.06.28., 2015.09.22., 2016.01.12., 2016.03.01., 2017.02.02.>

**제3조 (대학원)** 대학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상담대학원, 신학전문대학원, 설교대학원을 둔다. 대학원 학칙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7. 3. 1., 2016. 3. 1.>

## 제 2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4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다음과 같다.

- ① 수업연한은 4년(8학기)을 원칙으로 하되, 학칙이 정하는 학점을 이수한 자는 3년 6개월(7학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 4. 3>
- ② <삭제, 2014.11.11.>
- ③ 편입학 및 재입학 학생의 수업연한은 당해 학년의 수업연한과 같다.<개정 2014. 11. 11>

**제5조 (학년도)**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제1학기, 제2학기로 나눈다. <개정 2008. 4. 3., 2009. 3. 1.>

- ② 방학 중 필요에 따라 계절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수업일수)** 매학기는 15주 이상, 계절수업은 4주(학점당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 4. 3, 2009. 3. 1>

**제7조 (휴업일)**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① 일요일 및 국정 공휴일
- ② 개교기념일 (3월 13일)
- ③ 하계 및 동계방학
- ④ 임시휴업(필요에 의하여 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0. 10. 12.>

## 제 3 장 입학, 제적, 재입학, 전과

**제8조 (입학시기)** 입학시기는 매 학년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 초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6.01.12.>

- ① 편입학 및 재입학 <신설 2016.01.12.>
- ②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의 입학 <신설 2016.01.12.>
- ③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 12년 전 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입학 <신설 2016.01.12.>

**제9조** (입학 및 자격) 학사과정의 입학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허가하며,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 ①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거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단, 졸업예정자가 졸업을 하지 못할 경우 입학 자격이 상실된다.
- ② 신학과와 기독교교육과는 기독교인으로 세례를 받은 자
- ③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정원 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지원자격 및 전형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01.12.]

**제10조** (편입학 및 자격) 학사과정의 편입학은 정원의 여석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 ① 일반편입학은 3학년을 원칙으로 하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여석범위에서 허가한다. 단, 정원 외 편입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대학에서 제2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③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정원 외로 학사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④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01.12.]

**제11조** (입학전형) ① 입학전형(편입학 전형 포함)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 대학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 및 입학사정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회를 두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 ③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회를 두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 ④ 대학입학전형 중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영향평가를 위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회를 두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운영내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01.12.]

**제12조** (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허가(편입학, 재입학 포함)는 총장이 행한다.

- ② 지원자격 위반, 허위사실 기재 및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입학 후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한다.
- ③ 복수지원 및 이중 등록자로 확인되었을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전문개정 2016.01.12.]

**제13조** (등록) ① 학생은 매 학기초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1>

② 등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완료된다.<개정 2007. 3. 1>

**제14조** (수강신청)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는 무효로 한다.<개정 2007. 3. 1>

**제15조** (제적) 총장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적할 수 있다.

- ① 휴학기간 경과 후 다음 등록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②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휴학절차도 취하지 아니한 자
- ③ 타교에 학적을 가지고 있는 자
- ④ 성적불량(학사경고 통산 4회, 연속 3회)인 자.
- ⑤ 2회 이상 징계를 받은 자
- ⑥ 무기정학 처분을 받고 2년 이내에 징계해제 처분을 받지 못한 자

**제16조**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7조** (재입학)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심의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재입학에 관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7. 3. 1>

- ① 삭제<2007. 3. 1>
- ② 삭제<2007. 3. 1>
- ③ 삭제<2007. 3. 1>

**제18조** (전과) 전과는 학과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7. 3. 1., 2010. 10. 12.>

## 제 4 장 휴학, 복학 및 상벌

**제19조** (휴학) ① 재학생중 질병, 군복무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등교치 못할 시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 ② 학업 또는 경건의 훈련과정에서 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케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및 전염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총장이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 (휴학기간) 군입대 휴학을 제외하고 1회에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 (복학) 휴학자가 복학을 원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2조** (복학절차) 복학에 관한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7. 3. 1>

**제23조** (징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한 자
  2. 학력이 열등하며 진보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시험 중 부정행위를 행한 자
  4. 기타, 학칙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한 자
  5.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개정 2008. 4. 3>
-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한다.
- ③ 징계 및 징계의 해제는 교무위원회의 결의로 행하되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09. 3. 1.>

④ 징계를 하였을 시는 본인과 보증인(보호자)에게 통보한다.<개정 2007. 3. 1>

**제24조** (포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① 전학년 평균평점이 4.00이상인 자로서 졸업 시까지 품행이 방정한 자
- ② 삭제<2007. 3. 1>
- ③ 학교에 특별한 공을 세우거나 학교의 명예를 빛낸 자<개정 2007. 3. 1>

## 제 5 장 교 과 과 정

**제25조** (교과과정) 교과과정은 일반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각각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되 그 과정은 교과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7. 3. 1., 2010. 10. 12.>

**제26조** (부전공) 다음과 같이 부전공을 실시할 수 있다.

- ① 부전공이 허락되는 학과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7. 3. 1>
- ②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희망하는 자는 4학년 1학기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0. 10. 12.>
- ③ 부전공이수자는 부전공학과의 과목 중에서 24학점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교과과정은 별도로 정한다.
- ④ 부전공 이수자는 졸업 시 학위증서와 학적부에 이 사실을 기재한다.<개정 2007. 3. 1>

**제27조** (복수전공) 다음과 같이 복수전공을 실시할 수 있다.

- ① 복수전공학과의 전과정을 완료하였을시 제1, 제2 전공학위를 수여한다.
- ② 복수전공을 중도에 포기하면 제1전공학과에 한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 ③ 복수전공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7조의2** (연계전공) 다음과 같이 연계전공을 실시할 수 있다.

- ① 재학 중 각 연계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 ② 연계전공의 이수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09.22.]

**제28조** (졸업) 졸업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각 학과 교수회 심의를 거쳐 졸업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1., 2010. 10. 12.>

- ① 학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2>에서 지정한 130학점이상을 취득하며, 그 평균평점이 2.00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7. 3. 1, 2009. 3. 1., 2015.2.23>
- ② 다음의 특별 이수사항에 합격하여야 한다.
  1. 경진훈련과정
  2. 학과별 졸업인증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9. 3. 1., 2010. 10. 12.>
- ③ 삭제<2007. 3. 1>

**제29조** (이수학점) 교과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주 1시간씩 1학기간 15주 이상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 실습 등은 1주 2시간이상 1학기간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제30조** (학기당 이수학점) ① 학생은 매학기 18학점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15학점

미만이나 18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단, 계절수업으로 이수한 학점은 포함되지 않는다.)<개정 2007. 3. 1, 2014. 11. 11>

② 계절수업은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신설 2008. 4. 3, 개정 2009. 3. 1.>

③ 전학기 성적이 4.00이상인 자와 최종학기 등록자는 21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1>

④ 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다음학기 개시전(수강신청 이전)까지 교수학습 관련기관에서 상담과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강학점을 15학점으로 제한한다.<개정 2007. 3. 1, 2014. 11. 11., 2016.12.22.>

**제31조** (계절수업) ① 필요에 따라 하계 및 동계 방학 중 계절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4. 3, 2009. 3. 1.>

② 계절수업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7. 3. 1, 2008. 4. 3, 2009. 3. 1.>

**제32조** (학점교류) 학생은 재학기간 중 필요에 따라 소속학과장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국내 또는 외국의 타대학에 연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7. 3. 1>

## 제 6 장 시험, 성적, 졸업

**제33조** (성적평가) 본교의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7. 3. 1>

**제34조** (학업성적)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다.

등급	평점	점 수
A+	4.5	95 ~ 100
°A	4.2	92 ~ 94
A-	4.0	90 ~ 91
B+	3.5	85 ~ 89
°B	3.2	82 ~ 84
B-	3.0	80 ~ 81
C+	2.5	75 ~ 79
°C	2.2	72 ~ 74
C-	2.0	70 ~ 71
D	1.0	60 ~ 69
F	0	0 ~ 59

P(합격) : 실습, 실험 등의 성적으로 학점은 인정하나 평균평점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5조** (재수강) 학생은 이미 취득한 성적에 대하여 허가를 얻어 재수강 할 수 있다.

**제36조** (학년별 수료기준학점) 학년별 수료기준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3.

1.>

제1학년 : 졸업이수학점의 1/4 이상

제2학년 : 졸업이수학점의 2/4 이상

제3학년 : 졸업이수학점의 3/4 이상

제4학년 : 졸업이수학점의 4/4 이상

**제37조** (편입학자의 학점인정) 편입학자에 대하여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을 심사하여 본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및 학점만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개정 2010. 10. 12.>

**제38조** (학위수여) ① 정해진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07. 3. 1., 2015.2.23>

신 학 과	-----	문학사	
교 회 음 악 과	-----	문학사	
기 독 교 교 육 과	-----	문학사	
사 회 복 지 학 과	-----	문학사	
영 어 과	-----	문학사	<개정 2009. 8. 21.>
보 육 학 과	-----	문학사	
유 아 교 육 과	-----	문학사	
중 국 어 과	-----	문학사	[신설 2007. 3. 1.]
일 본 어 과	-----	문학사	[신설 2010. 10. 12.]
실 용 음 악 과	-----	문학사	[신설 2013. 5. 1.]
관 광 경 영 학 과	-----	문학사	[신설 2015. 2. 23.]

② 본 대학교의 부설기관에서 법령에 의해 정해진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 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7. 3. 1>

**제39조** (조기졸업)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기졸업할 수 있다.

① 매학기 평균평점이 4.00이상인 자로 본 대학의 정해진 전과정을 이수하고 7학기를 등록한 자 <개정 2007. 3. 1, 2008. 4. 3>

② 본 대학의 정해진 전과정을 이수하고 7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로 계절수업을 통하여 1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개정 2010. 10. 12.>

## 제 7 장 시험, 성적, 졸업

**제39조의2** (협약에 의한 학위수여) ① 국내 또는 외국대학과의 협약에 의하여 상대 대학에서 일정기간 본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이수한 학생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협약에 의한 학생의 선발, 학사관리, 졸업요건 및 학위수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8. 29.]

## 제 8 장 납입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 제40조** (납입금액) ① 납입금의 금액은 매학년도에 총장이 정한다.<개정 2008. 4. 3>  
②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의 법령에 의한 면제 및 감면 대상자에 대한 납입금액은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감면할 수 있다.
- 제40조의2** (등록금심의위원회) 본 대학교의 등록금 결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1. 8. 29.>
- 제40조의3**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9명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은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이들 위원 외에 학부모 또는 동문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부모 또는 동문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1/7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단, 학생 위원은 총학생회 및 총원우회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본조신설 2011. 8. 29.]

- 제40조의4** (심의사항) ①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결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세부 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8. 29.]

- 제41조** (납입금 반환) ① 납입금은 결석, 휴학, 정학 또는 제적의 이유로 감면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07. 3. 1>  
② 등록금납입방법은 대여분납제로 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정수는 등록금납입 시 징수하며 그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 9 장 장학금

- 제42조** (장학금) 본교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9. 3. 1.>

## 제 10 장 직 제

- 제43조** (직제) 총장을 두며 교원과 직원을 두되 그 직제와 직무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8. 4. 3>

## 제 11 장 대학평의위원회, 교수회 및 교무위원회

**제44조** (대학평의위원회) ① 본 대학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평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 4. 3]

**제44조의2** (교수회) 교수회를 둔다.

① 교수회는 총장, 조교수 이상의 교원 및 처장(실장)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2. 11. 16.>

②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7. 3. 1>

1. 삭제<2016.12.22.>

2. 대학평의위원회에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 추천<신설 2008. 4. 3>

3. 삭제 <2008. 4. 3>

4. 삭제 <2008. 4. 3>

5. 삭제 <2008. 4. 3>

③ 교수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교무위원회에서 교수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07. 3. 1>

**제45조** (학과 교수회) 각 학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과별 교수회를 둘 수 있다.

① 학과 교수회는 학과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학과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7. 3. 1>

1. 당해 학과의 교과과정 및 수업에 관한 사항

2. 당해 학과 학생의 지도에 관한 사항

3. 졸업심사에 관한 사항[신설 2007. 3. 1., 개정 2010. 10. 12.]

4. 학과 운영에 관계되는 제반사항<개정 2007. 3. 1>

**제46조** (교무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① 교무위원은 총장, 각 대학원장, 각 처장, 각 학과장, 도서관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개정 2007. 3. 1>

② 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7. 3. 1., 2010. 10. 12.>

1. 교학에 관한 주요사항

2. 교육방침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 총장이 부의하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기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신설 2008. 4. 3>

**제47조** (정족수) 교수회, 학과 교수회 및 교무위원회 및 기획위원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여 의결한다.<개정 2007. 3. 1>



## 제 12 장 외국인 및 재외국민학생

제48조 <삭제 2016.01.12.>

## 제 13 장 부속 및 부설기관

제49조 (부속기관) 다음의 부속기관을 두며 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① 도서관      ② 생활관      ③ 출판부      ④ 학보사
- ⑤ 방송국      ⑥ 사회봉사센터      ⑦ 교수학습개발센터[신설 2007. 3. 1]
- ⑧ 장애학생지원센터[신설 2011. 8. 29.]

제50조 (부설기관) 필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 14 장 공개강좌

제51조 (공개강좌) ① 실무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응용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 ② 공개강좌에서는 원격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공개강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3. 1.]

## 제 15 장 학생활동

제52조 (학생활동) 재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서울신학대학교 총학생회(이하“학생회”라 한다)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회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 3. 1>

제53조 (학생단체조직)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4조 (학생단체 운영) 학생단체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5조 (자치활동) 학생은 학내에서는 정치활동이나 정당이 관여하는 행사를 주관하거나 개최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성토, 시위, 농성, 등교 거부, 기타방법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제56조 (간행물) 학생단체의 모든 간행물 발간은 학교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57조 (학생생활지도위원회) 총장은 총학생회의 활동이나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를 둔다.

**제58조** (총학생회의 징계) 제53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다.

**제59조** (총학생회) 총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중지된다.

## 제 16 장 학 점 은 행 제

**제60조** (학위수여요건) ① 본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본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양3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전공필수 27학점 포함) 이상, 총 14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개정 2007. 3. 1.>
  3. 본 대학교에서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개정 2007. 3. 1, 2017.02.02.>
- ②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본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본 대학교 학위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1., 2014. 11. 11>
- ③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또는 고등교육법 제35조 1항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받은 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본대학교 총장에 의한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1조** (학위수여) ① 제60조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14. 11. 11>

- ② 제1항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표준교육과정과 제38조에 의한 학위종류가 다를 경우,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심의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③ 학위종류 및 전공<신설2017.02.02.>
- |     |       |   |
|-----|-------|---|
| 학위명 | 전     | 공 |
| 문학사 | 신     | 학 |
| 문학사 | 교회음악  |   |
| 문학사 | 사회복지학 |   |
| 문학사 | 실용음악  |   |

## 제 17 장 산학협력단

**제62조** (산학협력단) ① 본 대학교에 정관 제90조의 2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신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은 본 대학교 산하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교수, 부교수 또는 참여로 보한다.

④ 산학협력단에 필요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7. 3. 1>

## 제 18 장 자체평가

**제62조의2** (자체평가) ① 본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2. 5.]

## 제 19 장 장애학생지원

**제62조의3** (장애학생지원) ① 장애학생의 교내생활 및 학습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둔다.

②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8. 29.]

## 제 20 장 보 칙

**제63조** (학칙개정) 학칙의 개정은 개정안을 학교 구성원들에게 사전공고하여 기획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개정 2008. 4. 3., 2009. 3. 1., 2012.11.16.>

**제64조** (학칙외 세부규정)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규정, 학칙시행세칙 또는 내규,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07. 3. 1>

### 부 칙(1)

**제1조** 학칙시행세칙에 관한 제규정은 이를 별도로 정한다.

**제2조** 개정학칙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

**제1조** 개정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1조(현행25조), 제22조(현행28조), 제23조(현행29조,30조), 제31조(현행36조)는 1981 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 1981학년도 이전입학자 및 학적변동자(휴학 등)의 성적처리 및 졸업인정학점 등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부 칙 (3)

개정학칙은 198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전면개정)

### 부 칙 (4)

이 변경학칙은 198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5)

이 변경학칙은 198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6)

이 변경학칙은 198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7)

이 변경학칙은 1987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8)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8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981학년도 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하여 1990학년도까지 졸업하는 학생정원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의 변경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9)

이 변경학칙은 1991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0)

이 변경학칙은 199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1)

-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3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 정원령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입학할 허가하는 경우에는 학칙 제17조와 제6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12)

이 변경학칙은 1993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3)

이 변경학칙은 199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4)

이 변경학칙은 199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5)

이 변경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6)

이 변경학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7)

이 변경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8)

이 변경학칙은 2000 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

이 변경학칙은 2002 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

이 변경학칙은 2002 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1)

이 변경학칙은 2003 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2)

이 변경학칙은 2004 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3)

이 변경학칙은 2005 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4)

이 변경학칙은 2005 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5)

이 변경학칙은 2005 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6)

이 변경학칙은 2007 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변경학칙은 2008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과과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5조, 제28조, 제36조의 사항은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① 이 변경학칙은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 제25조, 제38조와 관련하여 2009학번을 포함한 재적생은 소정의 학점과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졸업 시 영어과의 학과명 칭을 부여할 수 있다.

## 부 칙

- ① 이 변경학칙은 2009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이 변경학칙은 2010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이 변경학칙은 2011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이 변경학칙은 2012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이 변경학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이 변경학칙은 201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이 변경학칙은 201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4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칙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5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설교대학원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의 사항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6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7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학과	최소 졸업 이수 학점 (2008학년도 입학생까지)	최소 졸업 이수 학점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신학과	140 이상	130 이상
기독교교육과	140 이상	130 이상
교회음악과	140 이상	130 이상
사회복지학과	140 이상	130 이상
선교영어학과	140 이상	130 이상
영어과	.	130 이상
보육학과	140 이상	130 이상
유아교육과	140 이상	130 이상
중국어과	140 이상	130 이상
일본어과	.	130 이상
실용음악과	.	130 이상
관광경영학과	.	130 이상